

|        |              |
|--------|--------------|
| 의안번호   | 2200565      |
| 의 퇴 인  | 한병도 의원       |
| 회 답 일  | 2024. 8. 29. |
| 추 계 번호 | 24B0970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의 지원기간도 연장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306억원, 2030년 1,978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8,185억원(연평균 1,637억원)으로 추계
-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고 이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의 지원기간을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186억원, 2030년 1,841억원 등으로 추계됨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지원기간을 현행 5일에서 15일로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19억원, 2030년 137억원 등으로 추계됨

[표 1]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연평균   |
|------------|-------|-------|-------|-------|-------|-------|-------|
| 출산휴가 확대    | 1,186 | 1,339 | 1,500 | 1,674 | 1,841 | —     | —     |
|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 119   | 125   | 129   | 134   | 137   | —     | —     |
| 추가재정소요     | 1,306 | 1,464 | 1,629 | 1,808 | 1,978 | 8,185 | 1,637 |

주: 1.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출산에 대한 인식 등 행태 변화와 출산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II.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76조(지급기간 등)제1항 |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br>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 의무규정 |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                    | 휴가 기간 중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함                                                                                          |      |
| 2  | 안 제76조(지급 기간 등)제2항 |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br>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1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함 | 의무규정 |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 연번 | 조·항(조제목)           | 추계여부 |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
| 1  | 안 제76조(지급 기간 등)제1항 | ○    | —              |
| 2  | 안 제76조(지급 기간 등)제2항 | ○    | —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sup>1)</sup>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2024.7 기준)

|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명목임금상승률(%) | 2.9  | 3.4  | 3.2  | 3.2  | 3.2  | 3.2  | 3.1  |

- 동 개정안은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564호)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5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하며, 해당 개정안과 중복 지급되지 않음

###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가. 출산휴가 확대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유산 및 사산 휴가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에 따른 유산·사산휴가는 임신을 유지한 기간에 연동되어 지급<sup>2)</sup>되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한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 증가 규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출산휴가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출산휴가 급여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근로자·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여 출산 등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하고, 여성근로자 및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표 2] 출산전후휴가 급여 현황: 2019~2024년

(단위: 백만원)

| 유형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출산전후휴가급여 | 268,516 | 285,771 | 289,498 | 304,899 | 301,713 | 347,012 |

주: 1.집행액 기준

2.2024년은 예산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혼인율, 출산율에 대한 행태 및 인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지급될 출산휴가 급여는 최근(2019~2023년) 집행현황을 토대로 산출하였으며, 출산휴가 급여의 집행 추이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추가재정소요의 산출에 있어 모든 제도적 사항을 고려하기 곤란하므로,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출산전후 휴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급기간이 다르고, 휴가 중 입·퇴사에 따른 잔여휴가일수 등으로 인해 일괄적으로 지원일수 등을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본 추계서는 이러한 요인은 고려하지 않음
- 개정안에 따라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출산휴가 급여의 사업대상자 수에 지원단가와 지급기간을 모두 곱하여 산출
- (사업대상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사업대상자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이며, 본 추계서에서의 추가재정소요 산출 대상은 근로자임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근로자 사업대상자는 통계청의 출생아 수 전망치(중위 기준)에 연도별 출생아 수 대비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의 비중을 적용한 후, 2023년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비중과 대규모기업의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
    - 추계기간 동안 출산휴가 급여의 수급자 수는 동 기간 출생아 수에 연도별 출생아 수 대비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의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
    - 출생아 수 전망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준용하며,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의 비중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출생아 수 대비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비중의 연도별 평균 증가폭(1.7%p)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2023년 기준 출산휴가급여 수급자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대규모기업의 비중과 2022년 기준 다태아 비중(5.8%)이 유지된다고 가정

[표 3]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천명)

| 구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출생아 수 전망치(중위 기준)(A, 천명) | 229   | 239   | 248   | 257   | 263   |
|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의 비중(B)     | 36.4% | 38.2% | 39.9% | 41.6% | 43.4% |
|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C=A×B)   | 83.4  | 91.2  | 98.9  | 107.0 | 114.1 |
| · 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D)      | 49.6  | 54.2  | 58.8  | 63.6  | 67.8  |
| - 단태아(E=D×94.2%)        | 46.7  | 51.1  | 55.4  | 59.9  | 63.9  |
| - 다태아(F=D×5.8%)         | 2.9   | 3.1   | 3.4   | 3.7   | 3.9   |
| · 근로자(대규모기업)(G)         | 33.8  | 37.0  | 40.1  | 43.4  | 46.3  |
| - 단태아(H=G×94.2%)        | 31.8  | 34.8  | 37.8  | 40.9  | 43.6  |
| - 다태아(I=G×5.8%)         | 2.0   | 2.1   | 2.3   | 2.5   | 2.7   |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 (지원단가) 본 추계서에서의 출산휴가 지급단가는 2024년 예산 기준 월평균 지원단가에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명목 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 추계기간 동안 NABO의 명목임금상승률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표 4]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월평균 지급단가(추정치):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 | 2.22 | 2.29 | 2.37 | 2.44 | 2.52 |
| 근로자(대규모기업)    | 2.23 | 2.30 | 2.38 | 2.45 | 2.53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급기간) 개정안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기간에서 현행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기간을 차감하여 산출

-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의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고용보험의 지급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이며, 대규모기업은 30일(다태아 45일)임
- 개정안에 따른 출산휴가 급여는 한병도위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64호) 제74조에 따라 120일(다태아 180일)임<sup>3)</sup>

- 개정안에 따른 근로자의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고용보험의 지급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20일(다태아 180일)이며, 대규모기업은 30일(다태아 60일)임<sup>4)</sup>

[표 5] 개정안에 따라 달라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추가 지급기간

(단위: 일)

|     | 현행(A)          |           | 개정안(B)         |           | 확대(B-A)        |           |
|-----|----------------|-----------|----------------|-----------|----------------|-----------|
|     | 우선지원<br>대상기업 등 | 대규모<br>기업 | 우선지원<br>대상기업 등 | 대규모<br>기업 | 우선지원<br>대상기업 등 | 대규모<br>기업 |
| 단태아 | 90             | 30        | 120            | 30        | 30             | 0         |
| 다태아 | 120            | 45        | 180            | 60        | 60             | 15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출산휴가 급여의 사업대상자 수에 지원단가와 지급기간을 모두 곱하여 산출

[표 6] 출산휴가 급여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 구분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우선지원<br>대상기업  | 단태아(천명)       | 46.7  | 51.1  | 55.4  | 59.9  | 63.9  |
|               | 다태아(천명)       | 2.9   | 3.1   | 3.4   | 3.7   | 3.9   |
| 대기업           | 단태아(천명)       | 31.8  | 34.8  | 37.8  | 40.9  | 43.6  |
|               | 다태아(천명)       | 2.0   | 2.1   | 2.3   | 2.5   | 2.7   |
| 우선지원<br>대상기업  | 단태아 추가재정소요(A) | 1,037 | 1,170 | 1,311 | 1,463 | 1,609 |
|               | 다태아 추가재정소요(B) | 128   | 144   | 161   | 180   | 198   |
|               | 소계(C=A+B)     | 1,165 | 1,314 | 1,472 | 1,643 | 1,807 |
| 대기업           | 단태아 추가재정소요(D) | —     | —     | —     | —     | —     |
|               | 다태아 추가재정소요(E) | 22    | 25    | 28    | 31    | 34    |
|               | 소계(F=D+E)     | 22    | 25    | 28    | 31    | 34    |
| 추가재정소요(G=C+F) |               | 1,186 | 1,339 | 1,500 | 1,674 | 1,841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8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 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가 확대되고, 고용보험 지급기간도 연장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지급기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배우자출산휴가가 확대되며, 이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의 지급기간도 확대됨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고용보험 지급기간: 현행 5일 → 개정안 15일<sup>5)</sup>
- (사업대상자) 지원대상 기관은 현행과 같이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함
  - 본 추계서에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수급자 수는 통계청의 출생아 수 전망치(중위 기준)에 근거하여 추정하며, 2023년 출생아 수는 잠정치이므로, 2022년 기준 출생아 수 대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의 비중(6.5%)을 토대로 산출

[표 7] 출생아 수 및 배우자출산휴가 수급자 수

(단위: 명)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출생아 수(A)        | 302,676 | 272,337 | 260,562 | 249,186 | 230,000 |
| 배우자출산휴가 수급자수(B) | 1,059   | 18,720  | 18,270  | 16,168  | 15,797  |
| 비율(C=B/A×100)   | 0.3%    | 6.9%    | 7.0%    | 6.5%    | 6.9%    |

주: 2023년 출생아 수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고용노동부

- 추계기간 동안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수급자 수는 통계청의 출생아 수 전망치(중위 기준)에 2022년 기준 출생아 수 대비 배우자출산휴가 수급자 수의 비중(6.5%)을 적용하여 산출

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1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표 8]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배우자출산휴가 수급자 수(추정치): 2026~2030년

| 구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출생아 수 전망치<br>(중위 기준)(A, 천명)                | 229    | 239    | 248    | 257    | 263    |
| 배우자출산휴가 수급자 수<br>( $B=A \times 6.5\%$ , 명) | 14,858 | 15,507 | 16,091 | 16,675 | 17,064 |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및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지급단가) 배우자출산 휴가 급여의 지원단가는 2024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를 토대로 산출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sup>6)</sup>에 따른 상한액 규정<sup>7)</sup>에 따라 본 추계서는 2024년 기준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401,910원/5일)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표 9]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연혁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상한액 | 382,770 | 382,770 | 382,770 | 382,770 | 401,910 | 401,910 |

자료: 각 연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본 추계서는 2024년 기준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급단가(401,910원/5일)가 개정안에 따른 지급기간(15일)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6) 제76조(지급 기간 등)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84호

[표 10]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 구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배우자출산휴가<br>수급자 수(A, 명)      | 14,858    | 15,507    | 16,091    | 16,675    | 17,064    |
| 기준 지원단가(5일)(B, 원)           | 401,910   | 401,910   | 401,910   | 401,910   | 401,910   |
| 개정안에 따른 지원단가(15일)<br>(C, 원) | 1,205,730 | 1,205,730 | 1,205,730 | 1,205,730 | 1,205,730 |
| 추가 지원단가(D=C-B, 원)           | 803,820   | 803,820   | 803,820   | 803,820   | 803,820   |
| 추가재정소요(E=A×D, 억원)           | 119       | 125       | 129       | 134       | 137       |

주: 1.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실제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 추계결과,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지원기간도 연장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306억원, 2030년 1,978억원으로 추계됨

-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고 이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의 지원기간을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186억원, 2030년 1,841억원으로 추계됨
-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의 지원기간을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19억원, 2030년 137억원 으로 추계됨

[표 1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억원)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연평균   |
|------------|-------|-------|-------|-------|-------|-------|-------|
| 출산휴가 확대    | 1,186 | 1,339 | 1,500 | 1,674 | 1,841 | —     | —     |
|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 119   | 125   | 129   | 134   | 137   | —     | —     |
| 추가재정소요     | 1,306 | 1,464 | 1,629 | 1,808 | 1,978 | 8,185 | 1,637 |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출산에 대한 인식 등 행태 변화와 출산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고용보험 가입률, 출산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 본 추계서의 주요 전제와 실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 및 지급액 등이 상이할 경우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기준 출생아 수 대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의 비중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므로, 향후 출생아 수 대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비중의 변화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추계기간 동안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일정하다는 전제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므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의 변화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 V. 작성자

###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경제비용추계과 | 남 희 | 배아형 |

### □ 대표연락처

|     |              |               |
|-----|--------------|---------------|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남 희 | 02-6788-3737 | nhee@na.go.kr |